

전주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가단137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 19.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21. 4.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21. 4. 19. 접수 제1011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D 주식회사는 C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해 주었다. D 주식회사는 2001. 1. 6.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각각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921587)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8. 17. “C은 원고에게 10,424,650원 및 그 중 1,397,148원에 대하여 200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19. 2. 4. 사망한 E의 아들로서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8의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2021. 4. 19.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이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각 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이종문

별지